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. 10. 31 선고 2024가단70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7.

판 결 선 고 2024. 10. 31.

## 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강릉시 C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79.3㎡를 철거하고, C 전 397㎡를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원고는 강릉시 C 전 397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그 지상 별지 기재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【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4호증,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】

## 2. 주장과 판단

### 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어 원고의 위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적법한 점유권원의 취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그 지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### 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2024. 3.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(망 D)의 친척으로 그 유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,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건물 가액 2,83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, 위 주장사실만으로 원고의 물권적 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이나 건물매수청구권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 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정원석

별지